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1
----------	------

발의년월일 : 2017년 8월 11일

발 의 자 : 김창수, 김인호, 김제리, 김혜련,
박마루, 서윤기, 성백진, 유광상,
진두생, 황준환, 유 용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정신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를 위한 조례 등 법령상 근거 미비
- 나.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청렴 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과 서울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 가.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 규정(안 제8조)
- 나.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 규정(제9조)
- 다.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등 규정(제15조)
- 라. 하정 청백리상 운영 등 규정(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서울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원
 - 다.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 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무수행사인
2.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
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조성 및 교육
5. 청렴문화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시장은 감사위원회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제9조(청렴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청렴문화 조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1.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2. 정책 집행 전 과정 감시 및 평가 후 환류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3.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학계, 법률, 언론,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부패·청렴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 정기회의는 연 1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제13조(청렴 자율준수제) “청렴 자율준수제”란 서울특별시 소속기관이 구성원의 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관리, 감독, 교육 등의 내부 시스템을 말한다.

제14조(청렴 자율준수담당관 지정·운영) 실·본부·국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등 각 기관은 「청렴 자율준수담당관」을 자체 지정하여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실·본부·국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등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기관장의 청렴리더십 강화
2. 청렴 담당자 지정 및 예산 확보
3.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실시 및 홍보
4. 부패요소 발굴 및 부패행위 모니터링 강화
5. 부패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

제16조(청렴 자율준수제 평가) ① 시장은 “청렴자율준수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하반기 연 2회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1. 상반기 중 청렴자율준수제 시행실태 파악에 필요한 조사·진단·평가·

점검 등 필요한 사항

2. 하반기 중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실적 평가 실시

② 제1항제2호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실적 평가를 위해서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인센티브 부여) 시장은 기관별 청렴자율준수 운영, 실적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대해 감사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청렴문화조성

제18조(청렴문화조성 회의)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실시하는 등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조성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서울시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9조(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기관별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제21조(청렴 서포터즈 구성 운영) ① 시장은 청렴에 대한 직원 관심을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국·본부(사업소 포함), 투자·출자·출연기관 각 부서마다 청렴·감사 업무 담당자를 ‘청렴 서포터즈’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렴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적 청렴실천을 위한 ‘청렴 자율준수제’ 이행 및 관리
2. 부서별 부패 취약분야 부패 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 신고 접수 및 개선방안 제안·추진
3. 운영 현황, 부패발생 점검 결과 등 필요사항을 청렴자율준수담당관에게 보고
4. 조직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실시 등 조직 내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 등

③ 실·본부·국, 사업소, 투자·출자·출연기관 등 각 기관의 취약분야 개선 및 청렴도 제고에 우수한 성과를 낸 청렴 우수 ‘청렴 서포터즈’에 대해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2조(시민 청렴모니터단 구성 운영)** ① 시장은 민관 협치를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정책수립을 위해서 「시민 청렴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 ② 모니터단은 신청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모 등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다.
- ③ 모니터단은 인·허가, 공사·용역, 민원 처리과정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청렴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제23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 운영,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5장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

- 제24조(하정 청백리상)** 시장은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이하 “하정 청백리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수상종류 및 인원) 하정 청백리상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하며, 대상은 1명, 본상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선정절차) ① 감사위원장은 실·국·본부, 사업소 및 자치구의 장으로부터 자체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 회 한다.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 및 공·사생활의 건실성,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하정 청백리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 ① 하정 청백리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17인 이내로 구성 한다. 내부위원은 감사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의 3급 이상 공무원 각 1명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하정 청백리상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하정 청백리상의 수상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사위원회는 하정 청백리상을 시상 한 다음날 자동으로 해산한다.
- ⑦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8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

②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 한다.

제29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제30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에 진행 중이거나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23조, 제27조, 제28조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총비용(합계) ≙ 56,25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56,250천원으로 연평균 11,250천원 비용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1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안 제6조,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23조, 제28조는 서울시 기 추진 사업(붙임 참조)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 ※ 제7조 및 제22조는 비예산 사업으로 서울시 기 추진 중임
 - 안 제12조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와 안 제16조제2호의 ‘청렴 자율준수위원회’ 의 구성 수는 각각 15명으로 하고 위원회 회의는 연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27조의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 구성은 17명으로 하되, 당연직(감사위원장 및 3급 이상 공무원) 2명을 제외한 15명에게 지급하고, 위원회 회의는 연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물가 상승률 미반영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석관(주무관) 박수진
 ☎ 02-3705-1286
 e-mail : park1002@seoul.go.kr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56,250천원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수당	11,250	11,250	11,250	11,250	11,250	56,250
	소계(b)	11,250	11,250	11,250	11,250	11,250	56,250
□ 총 비용(b-a)		11,250	11,250	11,250	11,250	11,250	56,250

○ 세부산출내역

사 업 명	세부산출내역
합 계	11,250,000원
위원회 수당 (제12조, 제16조제2항, 제27조)	◦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15명×2회 = 4,500,000원
	◦ 청렴 자율준수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15명×2회 = 4,500,000원
	◦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15명×1회 = 2,250,000원

※ 위원회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준용하여 추계

[붙임]

서울시 기 추진 사업

(서울시 감사담당관. 2017)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 3,000천원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교육자료 인쇄비 등 3,000,000원 = 3,000천원
포상금	○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 = 7,000천원
	- 최우수 = 2,000천원 2,000,000원*1개 기관
	- 우수 = 3,000천원 1,500,000원*2개 기관
	- 장려 = 2,000천원 1,000,000원*2개 기관
공기관등에대한경상 적대행사업비	○ 청백-e 통합모니터링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20,069천원

※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관한 사항임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청렴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	41,750천원
	- 청렴교육 영상 제작 35,000,000원*1종	=	35,000천원
	- 신목민심서 등 청렴교육 교재 제작 500권*7,500원	=	3,750천원
	- 청렴 홍보물(포스터 등) 제작 3,000원*1종*1,000부	=	3,000천원
	○ 투자출연기관 임원진 청렴교육	=	2,000천원
	- 투자출연기관 청렴교육 1,000,000원*2회	=	2,000천원
	○ 공직사회 혁신 대책 확산(캠페인 추진)	=	45,000천원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22,500,000원*2회	=	45,000천원
○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집 발간 청탁금지법 사례집 발간 20,000,000원	=	20,000천원	
국외업무여비	○ 국외업무여비	=	25,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9,500천원
포상금	○ 하정청백리 포상	=	9,000천원
	- 대상 5,000,000원*1명	=	5,000천원
	- 본상 2,000,000원*2명	=	4,000천원
	○ 청렴주간 운영 포상	=	4,400천원
	- 청렴포어 등 직원참여 공모전 선정 직원 포상	=	800천원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800,000원	
	- 청렴 O·X퀴즈 포상 30,000원(상품권)*10명*12월	= 3,600천원

※ 제6조, 제23조, 제28조에 관한 사항임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운영	= 5,000천원
	-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6명*2회	= 1,800천원
	-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자료 인쇄비 등 3,200,000원	= 3,200천원
	○ 간부청렴도 평가용역(실문조사)	= 35,000천원
포상금	○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포상	= 5,200천원
	- (최 우수) 1,000,000원*2개 기관	= 2,000천원
	- (우 수) 500,000원*4개 기관	= 2,000천원
	- (장 려) 300,000원*4개 기관	= 1,200천원

※ 제19조~20조에 관한 사항임